

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4서식]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<개정 2023. 8. 22.>

##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		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			
	주소(법인소재지)	(휴대)전화번호			
① 대상 토지	토지 소재지		면적	거래금액	
	1	시/군 동/읍/면 리 번지	m <sup>2</sup>	원	
	2	시/군 동/읍/면 리 번지	m <sup>2</sup>	원	
	3	시/군 동/읍/면 리 번지	m <sup>2</sup>	원	
② 자금 조달계획	자기 자금	③ 금융기관 예금액	원	④ 주식·채권 매각대금	원
		⑤ 증여·상속	원	⑥ 현금 등 그 밖의 자금	원
		[ ] 부부 [ ] 직계존비속(관계: ) [ ] 그 밖의 관계( )		[ ] 보유 현금 [ ] 그 밖의 자산(종류: )	
		⑦ 부동산 처분대금 등	원	⑧ 토지보상금	원
		⑨ 소계			원
	차입금 등	⑩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	토지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	원 원 원	(대출 종류: )
		⑪ 그 밖의 차입금	원	⑫ 소계	
		[ ] 부부 [ ] 직계존비속(관계: ) [ ] 그 밖의 관계( )			원
	⑬ 합계				원
	⑭ 토지이용계획				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·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### 유의사항

- 제출하신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.
-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할 수 없으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작성방법

1. ① “대상토지” 란에는 신고 대상 토지거래계약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와 면적, 거래금액을 적되, 「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비고 제11호에 따라 거래가격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.
2. ② “자금조달계획” 란에는 해당 토지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(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기 전에 부동산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조달방법)을 적고,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,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토지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.
3. ③ ~ ⑧란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.
4. ③ “금융기관 예금액” 란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로의 예금(적금 등)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5. ④ “주식·채권 매각대금” 란에는 본인 명의의 주식·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6. ⑤ “증여·상속” 란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적고,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√ 표시를 하며,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.
7. ⑥ “현금 등 그 밖의 자금” 란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(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)을 적고,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“보유 현금” 에 √ 표시를 하며, 현금이 아닌 경우 “그 밖의 자산” 에 √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.
8. ⑦ “부동산 처분대금 등” 란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9. ⑧ “토지보상금” 란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하거나 토지가 수용되어 지급받는 보상금 중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으며,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⑧란에 적습니다.
10. ⑨ “소계” 란에는 ③ ~ ⑧란의 합계액을 적으며, 대상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①란 각 필지별 거래금액 중 자기자금을 합산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.
11. ⑩란 및 ⑪란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.
12. ⑩ “금융기관 대출액 합계” 란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고, 토지담보대출·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난에 대출액을 적으며,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.
13. ⑪ “그 밖의 차입금” 란에는 ⑩란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,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난에 √ 표시를 하며, 부부 외의 경우 그 관계를 적습니다.
14. ⑫란에는 ⑩란과 ⑪란의 합계액을 적으며, 대상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①란 각 필지별 거래금액 중 차입금 등을 합산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.
15. ⑬란에는 ⑨란과 ⑫란의 합계액을 적되,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①란 각 필지별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.
16. ⑭란에는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(예시: 농업경영, 산림경영, 건축물 건축, 도로 이용, 현상보존 등)을 간략하게 적습니다.